

**꼭** 알아야 하는

#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 사항

-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승인자 편 -





# 꼭 알아두세요!

병의원, 약국 등에서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일('18.5.18)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재고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고 있는 경우,

**2019년 3월 31일**까지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 등록 후 전산보고를 시작하여야 합니다.

**2019년 4월 1일**부터는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.

## \*재고 등록 방법

'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[www.nims.co.kr](http://www.nims.co.kr))' 접속 ▶ '자료실' 참고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 
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('18.5.18) 초기,  
**병의원, 동물병원, 약국** 등에 한하여  
제도시행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재고를  
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보고를 시작하지 않고  
종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 
우선 소진(조제, 투약)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

- 하지만, **2019년 3월 31일까지 일자를 정하여**  
**마약류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**  
**등록한 후부터는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**  
하여야 합니다.



# 꼭 알아두세요!

마약류 취급보고 내역의 입력실수 혹은 오류의 경우  
**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** '변경보고' 합니다.

변경보고 기한(종전)

최초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



변경보고 기한(현재)

**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**

병의원, 동물병원, 약국은  
처방 내용이 변경된 경우,  
새로운 처방전에 따라 '변경보고'합니다.

✓ 변경처방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기한 이후라도  
가능합니다.

✓ 취급일자를 새로운 처방전 발행일자로 수정하여  
보고합니다.

변경보고 기한 이후라도 처방내용이 취소된 경우

✓ 취소처방전에 따라 '취소보고' 가능합니다.



# 꼭 알아두세요!

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**행정처분 유예기간**이  
**2019년 6월 30일** 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
	'19. 6. 30까지	'19. 7. 1부터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거짓 보고	행정처분	행정처분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혀 미보고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부 미보고	계도 후 행정처분 (미이행시)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보고항목 오류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보고기한 초과		

또한 병의원, 동물병원, 약국은

- 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‘조제·투약보고’ 시  
중점관리대상 마약류(마약, 프로포폴)의  
‘일련번호’, ‘제조번호’, ‘사용기한(유효기한)’을  
입력실수 하거나 미입력한 경우

2019년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 유예 대상입니다.





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,  
청정한 대한민국,  
마약류취급자와 취급승인자가  
함께 만들어갑니다.



|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[www.nims.or.kr](http://www.nims.or.kr))

| 상담센터 1670-6721